

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

2019. 12. 19.

금 융 위 원 회

1

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(SK증권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	
SK증권	이장훈 과장 (02-3773-8116)	손영채 과 장	02-2100-2650	박상준 팀장	02-3145-7611
		김경호 사무관	02-2100-2937	김정완 선임	02-3145-7587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



- (특례 내용)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
 -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에서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경우,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칭하는 방식으로만 가능
 -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운영시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하여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현금 유동성 확보 관련 업무방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 개시 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, 고객들에게 서비스 회원가입시 안내할 것

- (기대 효과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*를 제공하여 소액투자 기회 및 거래 편의성** 제고가 기대
 - *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정보(수익률, 기간, 채권 신용등급 등)
 - ** (기존) 기관 투자자 및 거액 자산가 위주 / 오프라인 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공급 (개선) 개인 투자자의 소액 투자 가능 /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공급

- (향후일정) '20년 10월 서비스 출시 예정

2

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(트루테크놀로지스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	
트루테크 놀로지스	하재우 대표 (070-8670-1342)	손영채 과 장	02-2100-2650	박상준 팀장	02-3145-7611
		허 성 사무관	02-2100-2655	김정완 선임	02-3145-7587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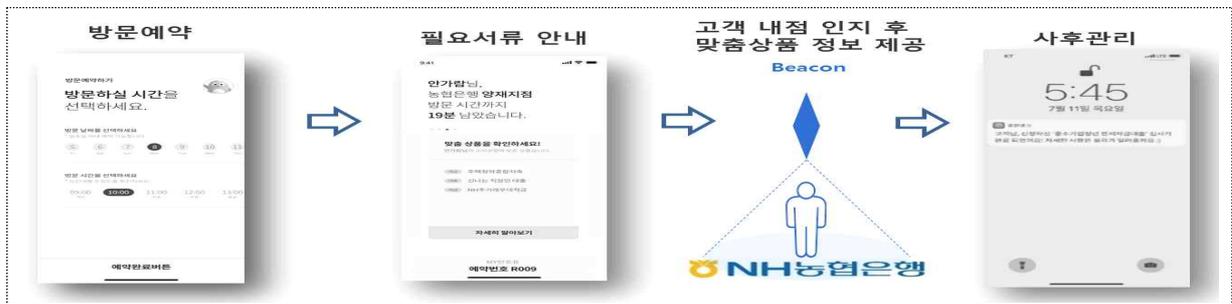


- (특례 내용) 자본시장법 제11조, 제40조제5호, 시행령 제43조제5항 등
 - 자본시장법령상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·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
 - 금융투자업(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)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 대차의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
- (심사결과)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 - * 부가조건 없음
- (기대 효과) 수기 입력이 아닌 자동화된 기관간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증권 대차 업무처리,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 방지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
- (향후일정) '20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

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(NH농협은행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보험과		금감원 보험감독국	
NH농협은행	류창보 파트장 (02-2059-3221)	김동환 과 장	02-2100-2960	홍영호 팀장	02-3145-7471
		현지은 사무관	02-2100-2962	변효길 선임	02-3145-7473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경우, AI·IoT·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 창구의 ①혼잡도 사전확인 ②방문예약 ③필요서류 안내 ④맞춤형 금융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



- (특례 내용) 보험업법 제91조제3항, 시행령 제40조제3항
- 고객이 앱을 통한 방문 예약 후 영업점 방문시, 모바일 앱의 알람에 예적금·신용카드 등* 외에 보험상품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특례
- * 예·적금,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보험과 달리 마케팅 정보 제공을 동의한 소비자에 대해 상품정보 제공·홍보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
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모바일App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는 소비자가 방문예정인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모집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고 영업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허용
- 모바일App을 통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광고 가능

- (기대 효과)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소비자가 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소비자의 소비·투자 패턴을 분석한 개인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

- (향후일정) '20년 11월 서비스 출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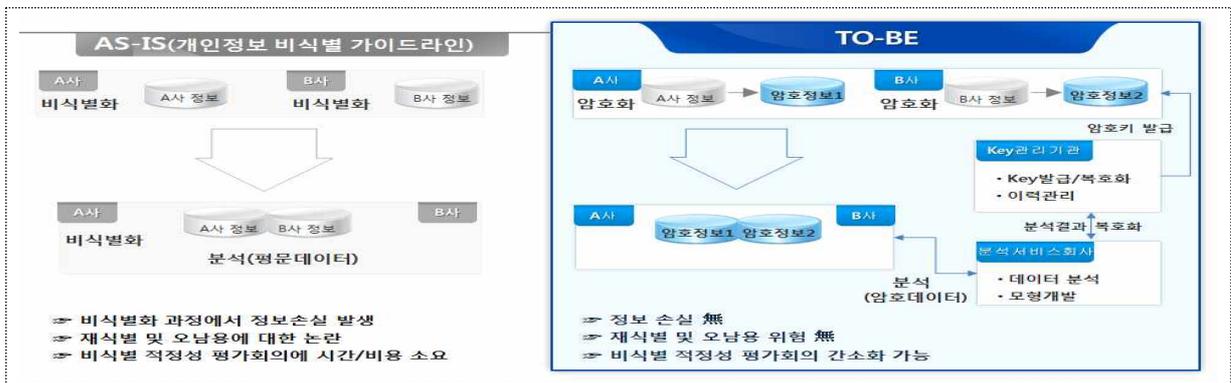
4

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(KCB 등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		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	
KCB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	이육재 본부장 (02-708-6161)	박주영 과 장	02-2100-2620	김재호 팀장	02-3145-7830
		김영준 사무관	02-2100-2696	윤동진 수석	02-3145-7831

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,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

※ 지정기간(6개월) 동안 동형암호 기술에 대해 모의테스트 실시



□ (특례 내용) 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, 제32조제1항제2항, 제32조제6항 등

○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의 ①부수업무가 제한되어 있으며, 개인 신용정보 제공·활용시 ②정보주체의 개별 동의가 필요

→ ①기술검증 및 모형개발 테스트를 위해 KCB가 데이터 분석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고, ②개인신용정보 수집·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

□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6개월)

※ 모의테스트를 위한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,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테스트 중단 및 즉시 삭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
- 동형암호 기술을 통해 통계작성(모형 개발 포함), 연구(상업적 연구 포함) 목적의 데이터 분석 등 모의 테스트를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 제출

□ (기대 효과) 동형암호 기술의 금융분야 활용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기회를 통해 향후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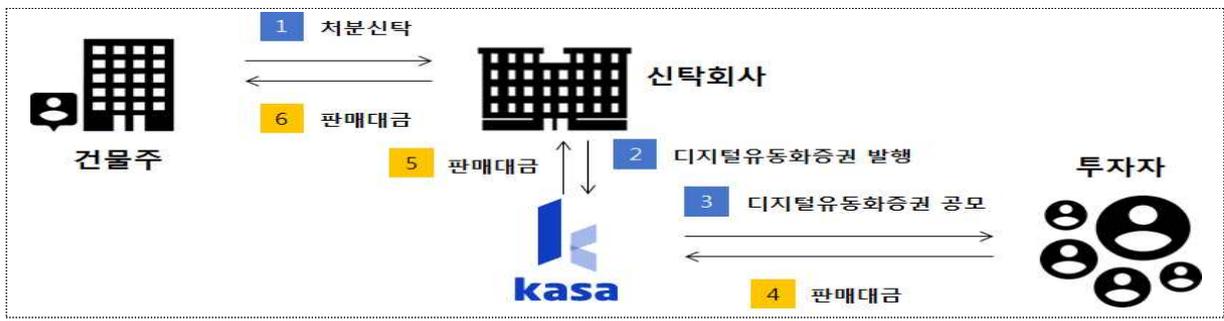
□ (향후일정) 6개월 간 동형암호를 통한 분석 등 모의테스트 실시

5

**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
(카사코리아 등)**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위 자산운용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	
		카사코리아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	예창완 대표 (02-6203-1470)	손영채 과장 고상범 과장	02-2100-2650 02-2100-2660
		유은지 사무관 노소영 사무관	02-2100-2653 02-2100-2662	민중후 선임 진시원 선임	02-3145-7591 02-3145-6732

- (서비스 주요내용)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·유통하는 서비스



- (특례 내용)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, 제373조, 제11조
 - 자본시장법상 ①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, ②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및 거래소 인·허가 특례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부가조건 주요 내용

- 클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(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등 금지)
- 매매방식은 다자간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, 사업규모 제한
 - ① 총 유동화 증권 발행규모를 혁신서비스 지정기간내 5천억원으로 한정
 - ② 투자자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,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으로 한정
 - ③ 투자자 일인당 1일 매매회전율을 100% 이하로 제한

- (기대 효과) 일반투자자의 중·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
- (향후일정) '20년 2월 서비스 출시 예정

6

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[한패스]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기재부 외환제도과	
한패스	심재범 이사 (010-2077-7673)	오재우 과 장	044-215-4750
		홍승균 사무관	044-215-4751

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



□ (특례 내용) 외국환거래법 제8조, 시행령 제15조의2

○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하는 외국통화의 매입·매도 업무만을 규정

→ 소액해외송금업자가 '송금 중개업'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

□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송금중개용 계좌를 등록하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, 분기별 150억원 이내로 운영
- 신청인과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송금 취급범위·수행방식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하고, 외환전산망을 통해 중개거래 내역을 보고할 것

□ (기대 효과)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액해외 송금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여 소비자 접근성 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

□ (향후일정) '20년 10월 서비스 출시 예정

7

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 (신한금융투자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자본시장과	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	
신한금융 투자	남기두 주임 (02-3772-4516)	손영채 과 장	02-2100-2650	박종길 부국장	02-3145-7616
		나혜영 사무관	02-2100-2652	조효진 조사역	02-3145-7586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·선물하고,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



- (특례내용) 자본시장법 제11조
-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·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
-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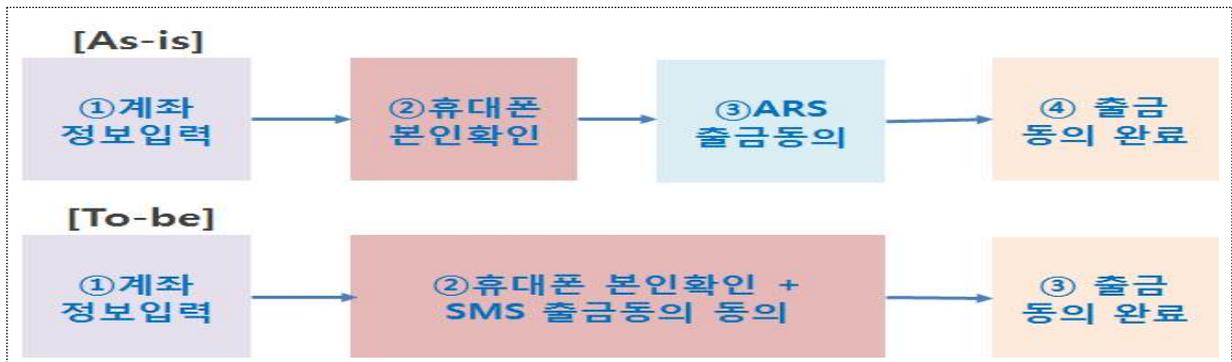
- 신한금융투자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로 신고할 것
-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의 합계는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(기업 대상 판촉용 판매(B2B)는 금지)

- (기대효과)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투자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,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기대
- (향후일정) '20년 6월 서비스 출시 예정

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 (쿠팡, 삼성카드)

신청기업명	기업 담당자	금융위 전자금융과		금감원 IT-핀테크전략국	
쿠팡	이윤석 매니저 (02-6150-5310)	이한진 과 장	02-2100-2970	정기영 부국장	02-3145-7415
삼성카드	이준호 프로 (02-2172-8514)	이소민 사무관	02-2100-2975	최진영 선임 조지훈 선임	02-3145-7417 02-3145-7424

- **(서비스 주요내용)** 전자상거래 이용 및 신용카드 발행시 SMS 인증 방식을 활용하여 출금계좌를 간편하게 등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



- **(특례내용)**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, 시행령 제10조, 감독규정 제6조
- 전자금융법령상 현재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서면, 녹취, ARS, 전자서명에 의해서만 동의를 가능

→ SMS 인증을 통해서도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

- **(심사결과)**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서비스 개시일 부터 6개월, 부가조건 충족시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6개월 자동 연장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- (공통)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하는 지급인을 개인에 한정할 것
- (쿠팡) 최초결제 이용자(월 200명 대상, 이용자별 40회/월 제한)를 대상으로 50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
- (삼성카드) 해당 카드의 월 결제금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

- **(기대효과)** SMS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과 동시에 출금동의를 가능 해짐에 따라 계좌등록 및 카드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
- **(향후일정)** 쿠팡은 '20년 3월, 삼성카드는 '20년 5월 서비스 출시 예정